

◎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5-7호

「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6월 16일

국립기상과학원장

「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대기감시 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1명(4급 또는 5급 1명)과 항공기상청 정원 1명(연구관 1명)을 상호이체하고자 함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5년 6월 26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(참조: 기획운영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, 국립기상과학원
- 전자우편: kgy4374@korea.kr
- 팩스 : 064-738-9071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(전화: 064-780-650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